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 제 2013~73 호

발의연월일 : 2013. 08. 27.

발 의 자:조기원, 이성복 의원

1. 제안이유

O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생산적 복지 확충,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,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바.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사. 협동조합의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협동조합 기본법」

나. 입법예고 : 2013. 8. 23 ~ 8. 29. / 물품우선구매 요청의견 반영
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라.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.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·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협동조합"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.
 - 2. "사회적협동조합"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.
 - 3. "협동조합등"이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포함한다.
- 제3조(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)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,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협동조합등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,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협동조합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
 - 3.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
 - 4.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 - 5. 재정 확보, 교육·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

- 6.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)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「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.
- 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법·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6조(경영지원 등)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- 제7조(교육훈련 지원 등)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·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

-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,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(재정지원)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협동조합등 간의 협력, 협동조합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·공 동사업, 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"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"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우선구매 촉진) 군수는 협동조합등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·대학·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- 1. 지역 내 협동조합등·민간기업·대학·단체 간 교류·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 지원
 - 2. 협동조합등의 지원·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
- 제11조(홍보 등) 군수는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.
 - 1.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
- 2.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
- 3. 주민 교양강좌,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
- 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사업 실시
- 제12조(포상)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거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